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특별공급(기관추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안내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청약 자격	해당 기관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2.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3.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요건 사항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자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
	청약 통장	필요없음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p>각 유형별 해당기관에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접수일 인터넷 청약 및 현장 접수 한 자에 의해 당첨자 선정 ※ 해당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한 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됨</p> <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대상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p>				
유의사항	<p>-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세대 내 2명 이상이 특별공급 중복신청시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 및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음</p>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